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4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이소영・이용우・이규민

신정훈 · 장경태 · 문진석

이용선 · 김주영 · 홍성국

박영순 • 조오섭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9항·제10항, 제61조).

법률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①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제61조제2항제11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9항"으로, "완성검사"를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44조제4항"을 "제44조제4항 및 제9항"으로, "정기검사"를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 ⑧ (생	설치와 검사 등) ① ~ ⑧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u>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u>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u>있다.</u>
<u><신 설></u>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
	개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u>로 정한다.</u>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2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44조제2항</u> 에 따른 액화석	11. <u>제44조제2항 및 제9항</u>

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12. ~ 14. (생략)

-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 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 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 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 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u>제44조제4항</u>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 (생 략)

<u>완성검사와</u>
그 결과의 공개
12. ~ 14.(현행과 같음)
③
<u>.</u>
1. ~ 3. (현행과 같음)
4. 제44조제4항 및 제9항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④ (현행과 같음)